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9 선고 2019가단6360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 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

변론 종결 2019. 6. 14

판결 선고 2019. 7. 19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,024,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29.부터 2019. 7. 19.까지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,3. 소송비용 중 2/3는 원고가,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,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9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1. 29.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연 5%, 그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(이하 '원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, 피고는 E 택시(이하 '피고 차량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자이다.

나. 원고 차량은 2018. 6. 16. 04:30경 서울 성동구 돌레15길7강변북로 일산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고장으로 정차하였고,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가 발생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9. 1. 28.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 59,000,000원을 지급하였고, 피고는 2018. 7. 27.부터 2019. 3. 6.까지 C에게 치료비 16,438,660원을 지급하였다.  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8호증, 을 제1,2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 주장

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보험금 중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

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, 원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량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취해야 할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, 원고 차량의 과실을 70%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.

### 3. 판단

가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

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고 있는 원고차량을 피해 충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시간은 04:30경이며, 도로교통법 제66조,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등에 의하면,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삼각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, 그 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,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 차량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,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나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과실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:40으로 봄이 타당하다(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내의 물건을 집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).

#### 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,024,536원! ? 42,561,340원(59,000,000원 - 16,438,660원) x 40%]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. 1.29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. 7. 1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

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하영